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문 화 복 지 위 원 회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

문 화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 제안경과

○ 본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관내 농어업(법)인에게 경영 및 시설자금 저리 융자지원 사업을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을 출연

3. 주요내용

○ 2027년 출연금 : 50백만원

○ 사업명 :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농업발전계정)

○ 사업내역

- 현재까지 남양주시 출연금액 : 2,316백만원(1989~2026)
- 경기도 기금 규모 : 매년 1,150백만원 적립
 · 경기도 200백만원 / 도농복합시(16개) 50백만원 / 일반시(15개) 10백만원
- 지원대상 : 농어업(법)인
- 지원내용 : 연 1% 융자 지원

○ 융자지원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융자금액(명)	130(2명)	90(2명)	360(2명)	210(2명)

○ 농어업경영자금

-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과수,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조건 : 연리 1%, 2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 지원한도 : 개인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일반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사업대상 :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과수,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 지원조건 :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청년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지원한도 : 개인 3억원, 법인 5억원 이내
- 자금사업 : 농지 구입, 시설현대화 등 영농기반 조성 자금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농생명정책과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과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자금을 각각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근 4년간 우리 시의 융자 지원 실적은 8명에 7억 9000만 원입니다.

○ 검토결과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기금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2 관계법령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대상사업) ① 농업발전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 경영자금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